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http://www.assetpl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4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4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http://www.assetplus.co.kr), 02-501-7707)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금융위원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4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5
<b>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b>	<b>6</b>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3. 모집(판매) 예정금액	6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6
5. 인수에 관한 사항	6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b>7</b>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7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7
4. 집합투자업자	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8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0
가.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3
가. 투자전략	
나. 모두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다. 비교지수	
라.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5
가. 일반위험	
나. 특수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7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9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1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4
가. 이익분배	
나. 과세	

<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b>27</b>
1. 요약 재무정보	2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8
<b>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b>32</b>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2
가. 회사개요	
나. 주요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4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4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5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5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5
<b>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b>	<b>36</b>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6
가. 투자자 총회 등	
나. 잔여재산 분배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라. 손해배상책임	
마. 재판관할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9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9
가. 업무보고서	
나. 수시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3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3
<b>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b>	<b>44</b>
<b>[붙임]펀드용어 정리</b>	<b>45</b>
<b>[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b>	<b>47</b>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신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 확 인 서

우리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발행인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 책임자로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28일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인 찬 (서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신고업무담당책임자 권 봉 찬 (서명)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84831)					
종류 (Class)	종류 A	종류 C	종류 W	종류 I	종류 S	종류 F
금융투자협회 코드	AE965	AE966	AE967	AE968	AP532	AS153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1)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투자대상”과“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http://www.assetpl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http://www.assetpl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84831)					
종류 (Class)	종류 A	종류 C	종류 W	종류 I	종류 S	종류 F
금융투자협회 코드	AE965	AE966	AE967	AE968	AP532	AS153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8.07.07	최초 설정
2008.10.20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로 규약 변경
2009.04.17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2010.03.08	세법 개정분 업데이트
2010.06.0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1.12.15	펀드 판매보수 적용
2013.01.16	수수료율 및 보수율 변경
2013.04.15	I 클래스 보수율 변경
2013.07.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2.0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4.02.21	종류형 S 신설
2014.05.01	종류형 F 신설 및 BM지수 변경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우.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 02-501-770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4.03.31.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억원)	
최광욱	1970	CIO (전무)	17개	3,878억원	- 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CIO (전무이사) - 현재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운용중 -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팀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주 1) 이 투자신탁은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해당사항 없음.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4.03.31.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억원)	
용두레	1985	대리	6개	1,540억원	- 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국내운용2팀 - 신영증권 기업분석팀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 1) 이 투자신탁은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해당사항 없음

**다.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한세웅	2008. 12. 01 ~ 2010. 06. 10	장인수	2008.07.07 ~ 2011.03.04
최광욱	2010. 06. 11 ~ 현재	한동완	2010.01.07 ~ 2012.08.31
		이하윤	2010.01.14 ~ 2013.07.01
		김세훈	2010.11.11 ~ 2013.12.01
		용두레	2013.07.01 ~ 현재

주 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주 2)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가.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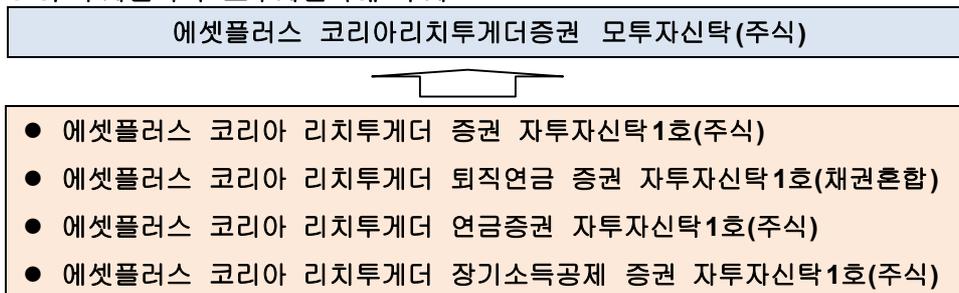
1)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2013.01.17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음
종류 C	2008.07.07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음.
종류 W		Wrap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종류 I	2013.06.10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인 투자자
종류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종류 F	-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

종류별	수 수 료			보 수 (연, %)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집합투 자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종류 A	납입금액의 0.90%이내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0.880	0.480	0.030	0.020
종류 C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0.880	0.800	0.030	0.020
종류 W	-	-		0.880	-	0.030	0.020
종류 I	-	-		0.880	0.050	0.030	0.020
종류 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0.880	0.350	0.030	0.020
종류 F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0.880	0.055	0.030	0.020

나.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70%이상, 국내채권 40%이하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자산총액의 7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추구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	90%이상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 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주식	70%이상 (다만, 국내주식 7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거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7)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9)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10)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11)증권의 차입	2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p>주1)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p> <p>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p> <p>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p> <p>2) 상기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여음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li> </ol>	

#### ※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동일종목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80조3항 각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2항 5호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li> <li>◦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 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li> </ul>	
<b>2)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b>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b>3)파생상품 투자</b>	<p>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이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b>4)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b>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b>5)후순위채권 투자</b>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2)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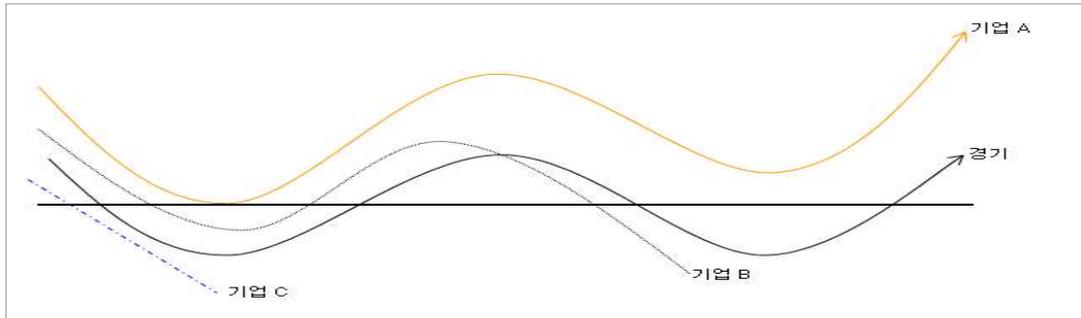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등은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 1) 주식운용전략

##### ①일등기업 투자전략



“일등기업”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을 말합니다. 일등기업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기업의 매출증가는 이익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이익증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안 좋은 기업(기업C → 기업B)부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등기업도 그 상황에서 이익을 증가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생존 기업(기업A)은 퇴출 당한 기업의 몫까지 차지하여 그 이익을 과거보다 많이 향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등기업의 시장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많은 이익으로 이어지며, 주주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②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



**2) 국내·외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①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②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 운용합니다.

**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90%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10%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text{비교지수} : [\text{KOSPI지수} \times 95\%] + [\text{CALL} \times 5\%]$$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지수는 1980년 1월 4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CALL은 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 1일물로 빌려주고 받는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하는 호가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주식에 투자하며, 40% 이하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 밖에 어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국내 경기순환과 외부변수에 따라 주식시장은 등락을 하며, 환매시점에 따라 투자원본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가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한 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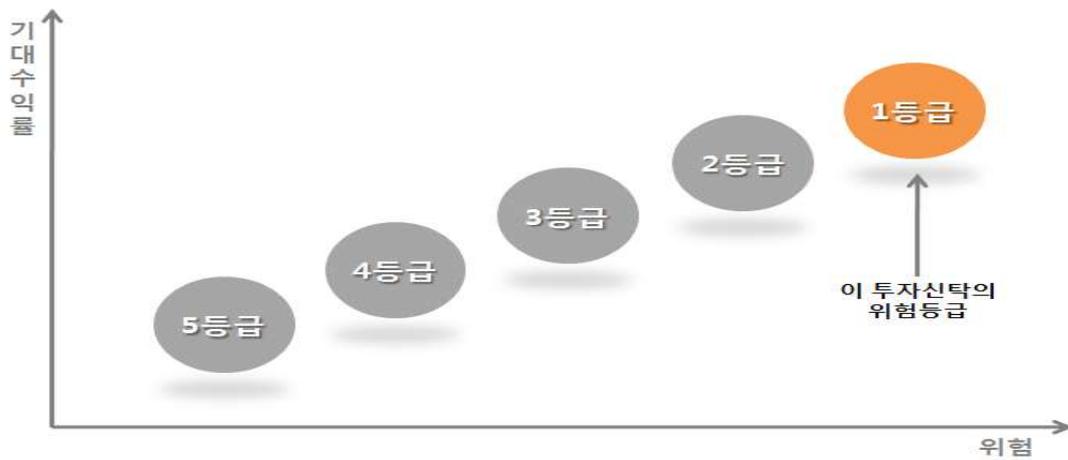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원본액 유지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등급	매우높음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음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보통	-위험자산에의 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음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음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 : 주식, 투기등급채권(BB+이하), 상품(Commodity), 상장부동산펀드(리츠:REIT)등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 최대손실가능비율이라 함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가능비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구 분	D+1일	D+2일
자금납입일(3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3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거나 해당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D일	D+1일	D+2일	D+3일
환매청구일 (3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3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환매수수료**

구 분	환매수수료율	후취 판매수수료율	부과시기
종류 A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	환매시
종류 C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W			
종류 I			
종류 S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	
종류 F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

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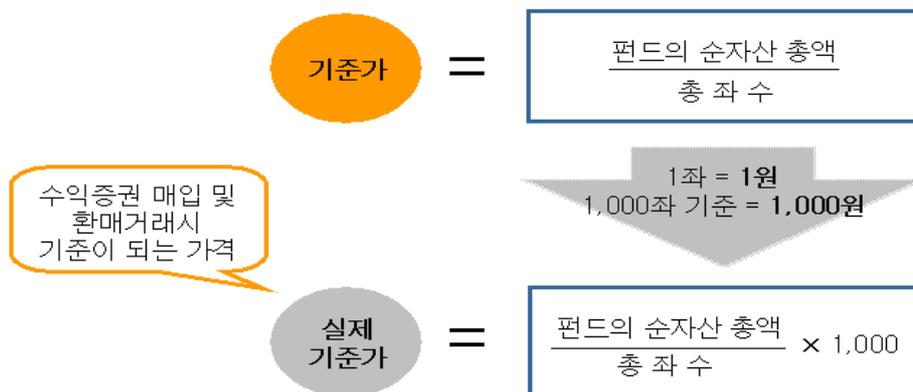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assetplus.co.kr">www.assetplus.co.kr</a>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자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의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시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⑨외국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상장채권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⑩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⑪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 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주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원 :

1.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2. 준법감시인
3.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부서장
4.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
5.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 자

주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0.90%이내	해당사항 없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해당사항 없음
종류 C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W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0.15%이내에서 판매회 사별로 차등 적용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I				
종류 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F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 관련 보수현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W	종류I	종류S	종류F	
집합투자업자 보수	0.8800	0.8800	0.8800	0.8800	0.8800	0.88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4800	0.8000	-	0.0500	0.3500	0.0550	
신탁업자 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회사 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14	0.0048	0.0000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b>총 보수·비용</b>	<b>1.4114</b>	<b>1.7348</b>	<b>0.9300</b>	<b>0.9800</b>	<b>1.2800</b>	<b>0.9850</b>	
기타비용(모 집합투자기구)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b>합성 총 보수·비용(TER)</b>	<b>1.4114</b>	<b>1.7348</b>	<b>0.9300</b>	<b>0.9800</b>	<b>1.2800</b>	<b>0.9850</b>	
증권거래비용	0.2117	0.2117	0.0000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주1)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이 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종류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234,669	546,067	889,385	1,909,625
종류 C	177,817	560,568	982,551	2,236,563
종류 W	95,325	300,512	526,731	1,198,988
종류 I	100,471	316,733	555,163	1,263,707
종류 S	131,200	413,608	724,963	1,650,220
종류 F	100,963	318,284	557,882	1,269,895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현황

**[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30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4500	
수탁회사 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기타 비용	0.0000	사유발생시 지출
<b>총보수/비용</b>	<b>0.8000</b>	
기타 비용(모펀드)	0.0036	사유발생시 지출
<b>합성 총보수/비용(TER)</b>	<b>0.8036</b>	
증권거래비용	0.0822	사유발생시 지출

[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C	종류Ce	종류S-P	
집합투자업자 보수	0.5400	0.5400	0.54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500	0.4700	0.2800	
신탁업자 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회사 보수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b>총 보수·비용</b>	<b>1.5400</b>	<b>1.0600</b>	<b>0.8700</b>	
기타비용(모 집합투자기구)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b>합성 총 보수·비용(TER)</b>	<b>1.5400</b>	<b>1.0600</b>	<b>0.8700</b>	
증권거래비용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C	종류Ce	종류S-T	
집합투자업자 보수	0.5000	0.5000	0.5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600	0.1700	0.1600	
신탁업자 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회사 보수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b>총 보수·비용</b>	<b>1.1100</b>	<b>0.7200</b>	<b>0.7100</b>	
기타비용(모 집합투자기구)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b>합성 총 보수·비용(TER)</b>	<b>1.1100</b>	<b>0.7200</b>	<b>0.7100</b>	
증권거래비용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분배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주)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 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 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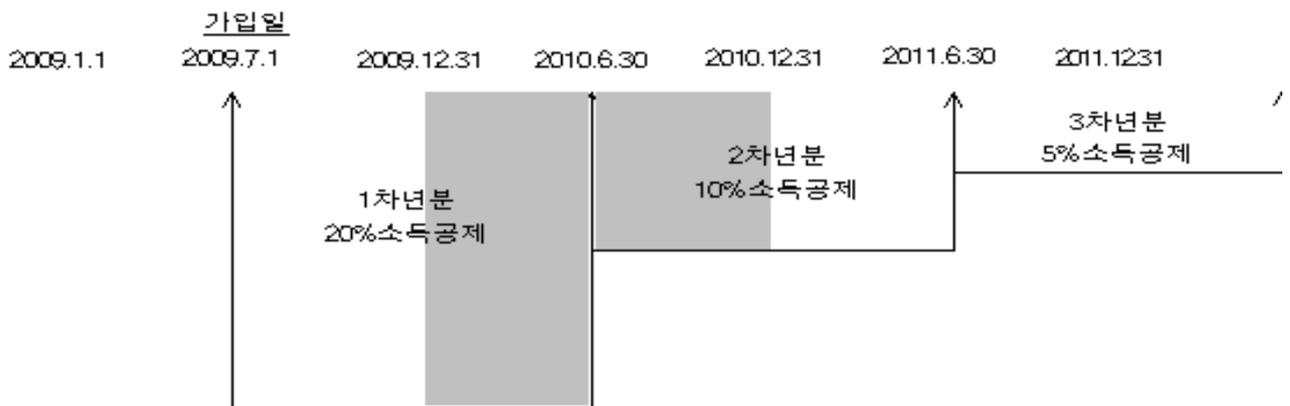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6. 계약 관련 유의사항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3년째 이후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3.07.06	2012.07.06	2011.07.06
운용자산	85,391,000,046	87,574,429,555	123,364,647,941
증권	84,719,978,004	86,982,098,221	121,670,856,21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45,171,621	95,380,539	93,791,729
기타 운용자산	525,850,421	496,950,795	1,600,000,000
기타자산	9,746,607	102,721,817	297,526,414
자산총계	85,400,746,653	87,677,151,372	123,662,174,35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67,203,571	480,097,003	26,820,810,255
부채총계	367,203,571	480,097,003	26,820,810,255
원본	91,218,421,517	105,869,485,329	96,841,364,10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6,184,878,435	-18,672,430,960	0
자본총계	85,033,543,082	87,197,054,369	96,841,364,100
손익계산서			
항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2.07.07~2013.07.06	2011.07.07~2012.07.06	2010.07.07~2011.07.06
운용수익	11,730,870,412	-19,657,129,839	28,437,508,515
이자수익	9,667,927	25,481,233	36,201,43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1,721,202,485	-19,682,611,072	28,401,307,080
기타 수익	4,941,129	11,854,118	29,615,118
운용비용	1,470,209,426	1,878,862,728	2,136,682,240
관련회사 보수	1,467,816,554	1,875,588,445	2,132,823,243
매매수수료	2,392,872	3,274,283	3,858,997
기타 비용	1,870,000	1,870,000	2,420,000
당기순이익	10,263,732,115	-21,526,008,449	26,328,021,393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 종류 A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1.17 ~ 2013.07.06	0	0	9	10	2	3	7	7

- 종류 C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7.07 ~ 2013.07.06	1,059	1,059	150	135	404	367	805	827
2011.07.07 ~ 2012.07.06	968	938	643	591	553	472	1,059	1,057
2010.07.07 ~ 2011.07.06	552	552	930	1,038	514	624	968	966

- 종류 I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6.10 ~ 2013.07.06	50	50	50	50	0	0	100	100

- 종류 S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000.00.00 ~ 0000.00.00	0	0	0	0	0	0	0	0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7.07~13.07.06)
집합투자기구	13.37	-3.36	5.80	12.49	12.49
참고지수	-0.85	-6.86	3.03	3.31	3.31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종류 A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7.07~13.07.06)
종류 C	12.40	-3.78	5.50	12.29	12.29
참고지수	-0.85	-6.86	3.03	3.31	3.31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종류 I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종류 S	-	-	-	-	-
참고지수	-	-	-	-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집합투자기구	13.37	-6.62	18.44	65.06	80.16
참고지수	-0.85	-13.26	9.37	27.29	1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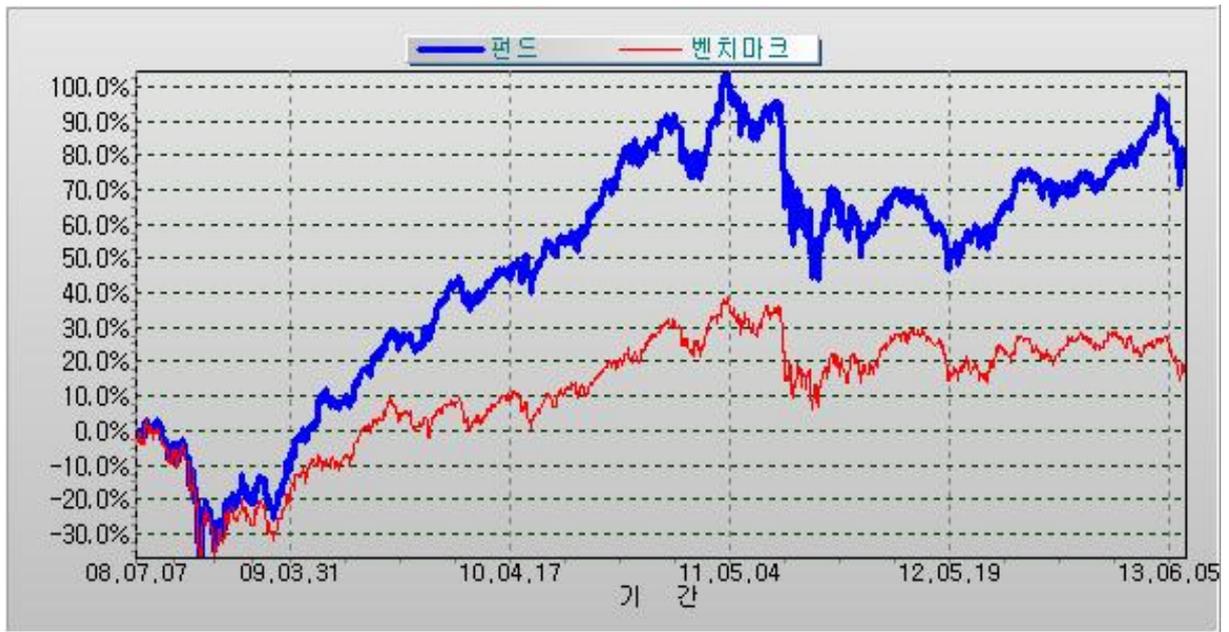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A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C	12.40	-7.43	17.43	63.64	78.61
참고지수	-0.85	-13.26	9.37	27.29	17.69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I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S	-	-	-	-	-
참고지수	-	-	-	-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KRW	-	-	-	84,720	-	-	671	10	85,401
	-	-	-	(99.20)	-	-	(0.79)	(0.01)	(100.00)

※ 투자대상 모펀드 비중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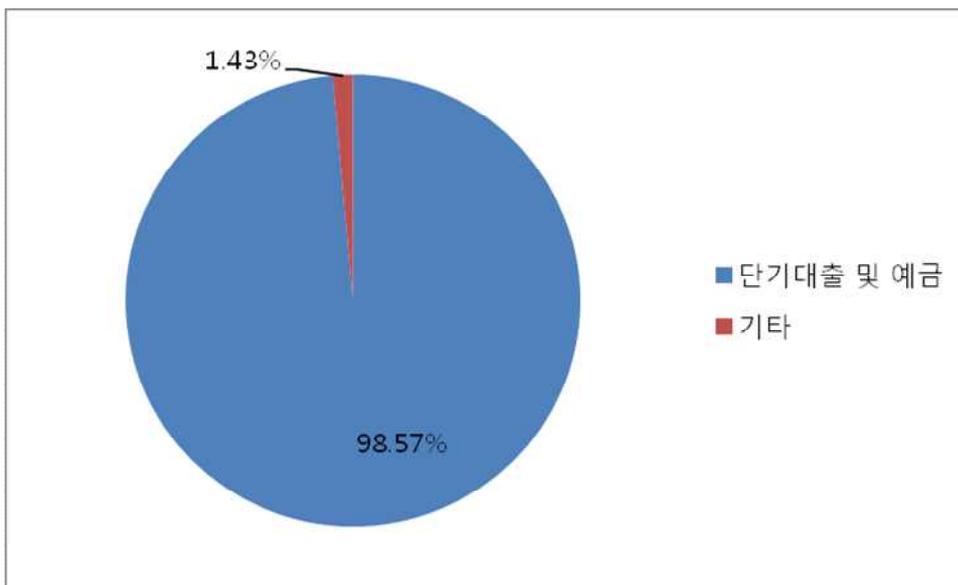
모펀드	평가액	비중
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	84,719,978,00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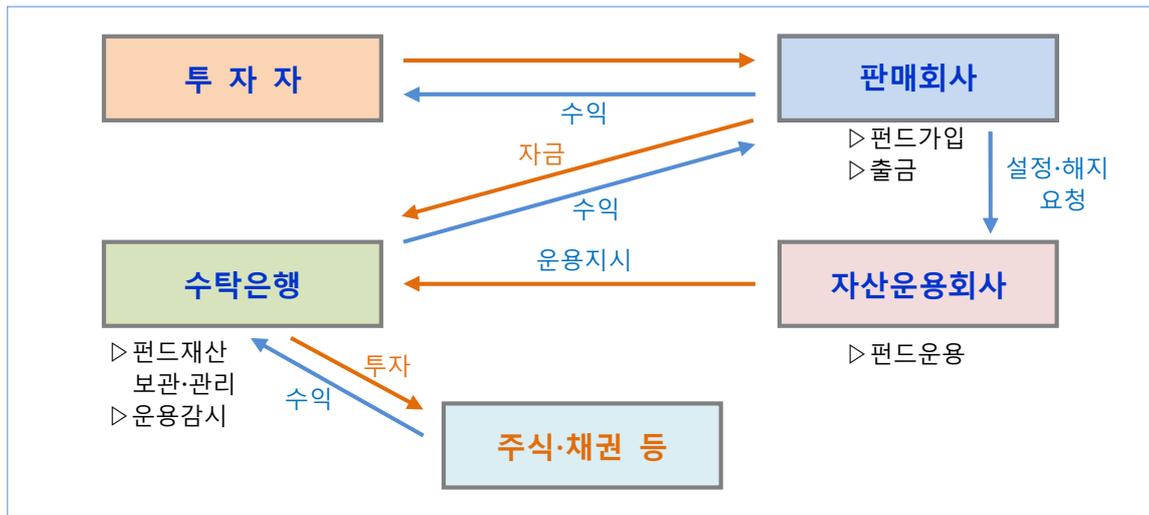
※ 모펀드 이외의 투자비중

(단위: 원, %)

구분	신용등급	총투자금액	비중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671,022,042	98.57
기타	기타	9,746,607	1.43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우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연락처 : 02-501-7707, www.assetplus.co.kr)
회사 연혁	1999. 02 이강금융컨설팅주식회사 설립 1999. 07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록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3. 09 지방행정공제회 / 정보통신부 위탁운용사 선정 2004. 09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 적립식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2005. 09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국민연금 우수운용사) 2006. 09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국민연금 우수운용사) 2008. 06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및 에플러스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2009. 12 머니투데이 한국펀드대상 - 루키상 수상 2010. 02 매경 한국펀드대상 - 라이징 스타상 수상 2010. 03 아시아경제 아시아펀드대상 - 뉴페이스상 수상 2011. 0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글로벌주식 우수상 수상 2011. 06 한국투자자보호재단 - 이해하기 쉬운 운용보고서 우수상 수상 2013. 02 매경 한국펀드대상 - 액티브 주식형 우수 중소형 운용사 선정 2013. 03 한국투자자보호재단 -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수상 2014. 03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 중국주식 우수상 수상
자본금	111억원 (자기자본 198억원)
주요주주현황	강방천(46.5%), 임직원(23.9%)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 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3.12.31	2013.03.31	계정과목	2013.04.01 ~ 2013.12.31	2012.04.01 ~ 2013.03.31
유동자산	78	44	영업수익	41	83
비유동자산	316	245	영업비용	49	135
<b>자산총계</b>	<b>394</b>	<b>289</b>	<b>영업이익</b>	<b>-8</b>	<b>-52</b>
유동부채	190	92	영업외수익	14	1
비유동부채	3		영업외비용	1	9
<b>부채총계</b>	<b>193</b>	<b>92</b>	<b>세전순이익</b>	<b>5</b>	<b>-60</b>
자본금	111	111	법인세비용	0	1
이익잉여금	90	87			
<b>자본총계</b>	<b>201</b>	<b>198</b>	<b>당기순이익</b>	<b>5</b>	<b>-61</b>

**라. 운용자산 규모 (2014.03.31.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 권			MMF	파생상품	재간접	투자일임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수탁고	4,230	2,026			1,457		11,820	19,53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b>회 사 명</b>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 (02)3702-3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a href="http://www.standardchartered.co.kr">www.standardchartered.co.kr</a>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가) 의 무**

-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책 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18 층 ☎ 02) 2014-20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cfirstfundservice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 (여의도동)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 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판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http://www.assetplu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역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사항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매매체결업무 수수료 및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2.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회사별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4. 세미나, 리서치 자료 등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유용성
중개회사 선정시 금지사항	1. 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됨. 2.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됨.
매매배분 기준	1.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2. 대량매매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적용 가능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 2. 다음 각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신탁업자 : 기존 제출분과 동일하므로 첨부를 생략함.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 기존 제출분과 동일하므로 첨부를 생략함.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 1. 예비투자설명서

#### 2. 간이투자설명서

#### 3.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 사본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 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